(재)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근무규정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재단법인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관리센터(이하 "재단"이라 한다)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로조건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직원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직원이라 함은 파견공무원 및 재단에서 임용한 사람을 말한다.
- 제3조(성실의무) 직원은 재단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제4조(복종의 의무)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.
- 제5조(비밀엄수의 의무)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6조(청렴의 의무) ①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접대 받을 수 없다.
 - ② 직원은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.
- 제7조(품위유지의 의무)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.
- 제8조(공·사의 구분의 의무)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·사를 분명히 하여 공적 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직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 니 된다.
- 제9조(직장이탈 금지) 직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.
- 제10조(영리업무의 제한) 직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,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.

- 제11조(손해배상)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단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.
- 제12조(근무시간) ① 직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한다.
 - ② 직무의 내용 또는 특수한 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근무시간의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.
 - ③ 직원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행사를 하거나 재단이 인정하는 각종 교육, 행사에 참석한 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한다.
- 제13조(중식시간) 직원의 근무시간 중 중식 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. 다만, 재단의 사정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.
- 제14조(시간외·야간 및 휴일근무) 재단은 업무 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시간외, 야간 및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직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- 제15조(수당 지급) 시간외근무, 야간근무,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보수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- 제16조(근무상황부) 직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센터장이 정한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- 1. 제21조의 휴가가 필요한 경우
 - 2. 질병 그 밖에 사유에 의하여 근무시간에 퇴청하고자 할 때
 - 3. 근무시간 중 외출할 때
 - 4. 익일 출근도중 공무로 인하여 다른 곳을 경유하여 귀청할 필요가 있을 때
- 제17조(출장명령) ① 법인은 업무상 필요할 때 직원의 출장을 명할 수 있다.
 - ② 출장명령을 받은 직원(이하 "출장직원"이라 한다)은 당해 업무수행을 위해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③ 출장직원은 지정된 출장 기일 안에 그 업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, 전보 그 밖의 방법으로 센터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.
- 제18조(출장여비) 출장여비의 지급은 재단 여비규정에 의한다.
- 제19조(출장복명) 출장직원이 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장명령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복명하여야 한다.

- 제20조(휴일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휴일로 한다.
 - 1. 일요일
 - 2. 국경일 및 법정 공휴일
 - 3. 그 밖에 정부 또는 법인에서 휴일로 지정하는 날

제21조(휴가의 종류) 직원의 휴가는 연가, 병가,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.

제22조(휴가의 절차) 직원이 휴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센터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경우에는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제23조(연가일수) 직원의 연가일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.

- 제24조(연가계획 및 허가) ① 센터장은 직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
 - ② 제23조의 연가 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. 다만, 공무외의 국외여행허가 그 밖에 사유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-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.
 - ④ 센터장은 직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업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.
 - ⑤ 공무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직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. 이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.
 - ⑥ 센터장은 직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할 수 있다.
- 제25조(연가일수에의 산입) ① 결근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산입한다.
 - ② 제1항의 경우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결근 1일로 계산한다.
- 제26조(병가) ① 센터장은 직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.
 - 1.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

- 2.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
- ② 업무로 인한 상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.
- ③ 병가 일이 7일 이상일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- 제27조(공가) 센터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동안 공가를 허가 하여야 한다.
 - 1. 징병검사나 근무연습 소집 또는 검열점호가 있을 때
 - 2. 공무로 국회, 자치단체 의회, 법원, 검찰, 기타 국가기관의 소환이 있을 때
 - 3.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
 - 4. 천재지변, 화재, 수해, 교통차단,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
 - 5.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
- 제28조(특별휴가) ① 본인이 결혼하거나 자녀를 입양할 경우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경우 에는 [별표 1]의 기준에 의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.
 - ② 여자직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.
 - ③ 여자직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.
 - ④ 자녀 또는 손자녀가 있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.
 -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직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23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 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.
- 제29조(휴가기간 중의 공휴일)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다만, 휴가일수가 1개월 이상 계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제30조(휴가기간의 초과) 이 규정에서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.
- 제31조(다른법령의 준용) 직원의 근무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[별표1]

경조사별 휴가일수표(제28조 제1항 관련)

구 분	대 상	일 수
결 혼	본인	5
	자녀	1
출 산	배우자	10
입 양	본인	20
사 망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
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	3
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3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1
	고 영제자매의 매구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1

[※] 입양은 「입양 특례법」에 의한 입양에 한하며, 입양이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경우에는 2일 범위 내에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음. 이 경우, 원격지라 함은 가장 빠른 교 통수단으로도 왕복 8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을 말함

[※]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여야 함